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O 예 산 현 액 : 7억 8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7억 7천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7억 7천 7백만원

O 결손처분액 :

O 미수 납액: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100%)임.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합	계	784,048	777,067	777,067	_		99.1	100.0
세외수입		23,870	16,889	16,889	_	_	70.7	100.0
경상적세외4	수입	6,538	6,524	6,524	_	_	99.7	100.0
재산임대수입]	6,066	6,066	6,066			100.0	100.0
공유재산임	대료	6,066	6,066	6,066	_	_	100.0	100.0
이자수입		472	457	457	_	_	96.8	100.0
기타이자수	.입	472	457	457	_	_	96.8	100.0
임시적세외수		17,332	10,365	10,365	_	_	59.8	100.0
기타수입		17,332	10,365	10,365	_	_	59.8	100.0
시·도비반환급	감수입	17,332	10,365	10,365	_	_	59.8	100.0
국고보조금		760,178	760,178	760,178	_	_	100.0	100.0

[※] 결손처분액=불납결손액+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O 예 산 액 : 68억 3백만원

O 예산증감 : 5억 9백만원

O 예산현액: 73억 1천 3백만원

○ 지 출 액 : 70억 9천 5백만원

O 이 월 액:

○ 불 용 액 : 2억 1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9%(전년도 6.4%)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지출잔액 2억 9백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3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7,313,064	7,095,057	0	218,007	2.9
	사 업 예 산 계	7,155,263	6,964,536	0	190,727	2.6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93,873	227,835	0	66,038	22.4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72,248	66,279	0	5,969	8.2
비상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6,665	36,665	0	0	0
대비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3,480	84,748	0	8,732	9.3
민방위	예 비 군 육 성 지 원	350,000	349,681	0	319	0.09
대응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61,712	0	1,488	2.3
능력 강화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20,000	219,987	0	13	0.0
	사 회 복 무 요 원 관 리	669,067	573,758	0	95,309	14.2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국비)	5,600	5,600	0	0	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민방위교육운영비(국비)	647,120	647,120	0	0	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국비)	30,875	30,875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331,410	322,788	0	8,622	2.6
민 방 위 교 육 장 운 영	171,731	167,494	0	4,237	2.4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0	0	0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000	3,200,000	0	0	0
민방위 장비 보급 · 확충	37,406	37,406	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국비)	882,588	882,588	0	0	0
일 반 예 산 계	157,801	130,521	0	27,280	17.2
기 본 경 비	157,731	130,451	0	10,106	6.4
재 무 활 동	70	70	0	0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촉탁직인건비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예산 확보를 위해 민방위 교육장 공공운영비(공공운영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9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5개 사업에 6억 3천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사업 1억 3천만원 총 2개부처 7억 6천만원을 수렁하여 7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비상기획관 공유재산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0원.

- 건물 2,517.35m² 4억 5천 6백만원,

- 기타 2건 3천 4백만원,

총 4억 9천 1백만원 상당의 금액임.

〈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개, m², 천원)

		2	018년	도 말		당해연도 증감액					2	2019년도 말		
-	구 분		보유현황			증가			감소			보유현	혈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7	합 계	3	2,517	491,079							3	2,517	491,079	
	계	3	2,517	491,079							3	2,517	491,079	
-11 -1	공용재산	3	2,517	491,079							3	2,517	491,079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711 12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19년도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2천 3백만원

○ 관리전환 등 1천 3백만원

○ 당해연도말 1천 만원 증가하여

○ 총 수량 79개, 현재액은 3억 2천 5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정부									20	19	년도 물	뚴 중	동감현황					
연	물품	품명	단	정	내용	구분	2018년 도말		추	득				,	처분	<u>1</u>		2019 년도말	
번	분류 번호		위	수	연수		현재액	구매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매 각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보유액	
	4	합계				수량	75	8				8		4			4	79	
	ĭ	3 M				금액	314,491	23,432				23,432		13,038			13,038	324,885	
1	4010	냉방기	 개	5	10	수량	5							2			2	3	
1	1701	-0.071	/ II		10	금액	10,938							6,896			6,896	4,042	
2	4010	냉난방기	 개	7	9	수량	7	8				8		2			2	13	
	1787	9 5 9/1	/ II		3	금액	25,681	23,432				23,432		6,142			6,142	42,971	
3	4321	노트북컴퓨터	개	32	6	수량	32											32	
	1503	<u></u>	, ıı	02	02		금액	41,527											41,527
4	4410	복사기	 개	5	6	수량	5											5	
	1501	7.1/1	, II			금액	20,590											20,590	
5	4511	비디오프로	 개	6	8	수량	6											6	
L	1616	젝터	, II			금액	88,523											88,523	
6	4511	영상정보디스	개	18	5	수량	18											18	
Ľ	1893	플레이장치	· "	10		금액	121,126											121,126	
7	4512	디지털캠코더 또는비디오카	-a))	,		수량	1											1	
	1516	또는미니모카 메라	개	1 1	9	금액	2,211											2,211	
8	5216	디지털비디오	개	1	6	수량	1											1	
	1545	레코더	/Π 	1	0	금액	3,895											3,895	

Ⅱ.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O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7억 8천 4백만원) 대비 99.1% 징수한 7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 (1억 4천 7백만원)한 수준임.
 - ※ 징수결정액(7억 7천 7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전년도 100%)임.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	019년도		2	018년도		2	2017년도		
에신각목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합계	784,048	777,066	99.1	620,700	630,224	101.5	639,086	647,981	101.4	
공유재산임대료	6,066	6,066	100.0	3,359	6,066	180.6	3,063	3,063	100.0	
기타이자수입	472	457	96.8	428	618	144.3	I	1,202	-	
시·도비반환금수입	17,332	10,365	59.8	18,350	16,407	89.4	10,369	19,706	190.0	
그외수입	-	_	-	1	5,708	-	1,677	33	1.9	
지난연도수입	_	-	-	_	2,862	-	_	_	_	
국고보조금	760,178	760,178	100.0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9년도		20	18년도		20)17년도	
예산파측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합계	777,066	777,066	100.0	630,224	630,224	100.0	650,539	647,751	99.6
공유재산임대료	6,066	6,066	100.0	6,066	6,066	100.0	3,062	3,062	100.0
기타이자수입	457	457	100.0	618	618	100.0	1,202	973	80.9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5	10,365	100.0	16,407	16,407	100.0	22,265	19,706	88.5
그외수입	-	_	_	5,708	5,708	100.0	33	33	100.0
지난연도수입	_	_	_	2,862	2,862	100.0	_	_	_
국고보조금	760,178	760,178	100.0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7억 8천 4백만원) 대비 0.9%(698만원) 부족 징수하여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입 추계나 세입처리 방식의 다음과 같은 부적정한 측면에 대하여 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가. 과학적인 세입추계 필요

○ 비상기획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등에 대하여 전년도(2018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 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이자 포함)으로, 징수 결정액(1,037만원) 대비 수납률은 100%이지만, 예산현액(1,733만원) 대비 수납액은 59.8%(1,037만원)에 그치고 있음.

〈최근5년간 시·도비반환금 수입 예산/수납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17,332	18,350	10,369	10,367	8,345
징수액	10,365	16,408	19,706	15,228	20,280
수납률(%)	59.8	89.4	190.0	146.9	243.0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9년도			201	18년도		201	17년도		
에산파득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5	10,365	100.0	16,407	16,407	100.0	22,265	19,706	88.5	

- 이는 2018년도에 자치구에 지급한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정산액과 2019년도 세입편성액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보 <i>ス</i>	예산 집행 및 반	납 연도별 통	F계 현황〉	(단위 : 원)
집행연도	시비집행잔액(A) -징수결정액-	반납연도	시비반납액(B) -수납액-	차액(A-B)
2011	5,676,270	2012	6,537,270	△861,000
2012	12,490,554	2013	11,144,900	1,345,654
2013	3,555,960	2014	3,973,960	△418,000
2014	25,351,860	2015	20,280,330	5,071,530
2015	18,475,160	2016	15,227,350	1,213,930
2016	22,265,980	2017	19,706,120	2,559,860
2017	16,407,545	2018	16,407,540	0
2018	10,365,610	2019	10,365,610	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u> </u>	설 정
징	괃	항	목	
20	00 /	세외	수입	
	22	20 9	임시적세외수입	
		224	1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나. 세입예산 과목 오류 지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다음연도에 정산 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二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	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	
		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	
		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	
		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그러나, 비상기획관은 2014년도 자치구 국비매칭사업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을 2016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 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 세입연도에 즉시 국고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한 2019년도에 해당 금원을 별도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지서를 발급 (2019.7.17.)받아 집행(2019.7.22.)하였음.

〈 최근 4년간 '그외수입' 세입처리 현황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11 400	1 법 /배법/기의 한	つ /	(11 · 21 1)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	_	1,677	_
징수액	-	5,709	33	2,697

〈 해당 국고보조금 이자 세입처리 내역 〉

- ·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이자(69,760원/성동,미포) : 2015년도에 미반납
- · 2016년 2014년 발생 국고보조금 빈환금 세입(그외수입)으로 처리
- · 2018년 2016년 세입징수된 그 외수입(69,760원)을, 2019년 세출예산 편성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하여 국고 고지서 반환 처리

〈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공문 〉

제 목 2014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납(민방위담당관-10976, 2019.7.22.)

나. 금 액: 금69,760원(금육만구천칠백육십원)

- 2014년 민방위 교육운영 집행 이자: 69,760원

다. 납 부 처 : 행정안전부

라.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무활동(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보전지 출,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편성부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

마. 납부방법 : 납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

〈 비상기획관 2019회계 결산서 〉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민방위당당관]

과목		예산성립후 중강인					HTD	집행간액 용-0-3-9-9				
(조작 - 사업)	예산액	世紀の記号	0/8	+10X8H	예산원역 G=3HD	기출액 경	보조금 반입 만입	9-649	#28 80518	国行業を成の	対象性改装 の数が10名小数位	
(조착 - 사업)		3 00,483	85	55			0	+8+2+8+8 +8+2+8+8	나 불자역 ②	지출잔액의	Ø18181®	
재무활동(비상기획관 인방취담당관)	70,000				70,000	69,760		245		240		
보전지층	70,000				70,000	69,760		340		240		
국고보조금 반환	70,000				70,000	69,760		240		240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국고보 조금 타 빈환금 (802-01)	2019	70	70	0	0.0
반환금 및 기타		2018	300	291	9	3.0
	(802 01)	2017	700	487	213	30.4

<최근 3년간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국고	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국고	
재교부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业 十当	187	1001	이사들장박	반납시기	
2018	2019	760,178	746,546	13,632	885	2020년	
2017	2018	623,977	609,621	14,386	227	2019년	
2016	2017	627,477	611,509	15,967	265	2018년	

-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상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함으로써 이후 실제로 국고에 적기 반납하지 못하는 오류를 매년 반복해온바, 향후 규정에 맞는 회계처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제287회 정례회(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그외수입' 세입처리에 따른 오류가 지적되바 있음(2019.6.19.).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1)에서는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였음.

¹⁾ 서울특별시 예산평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 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 세출결산

O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73억 1,306만원) 대비 97.0%(70억 9,506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2.9%(2억 1,801만원)로, 전년(6.4%) 대비 3.5% 감소한 수준임.

가. 예산의 전용 사용

예산과목

통계목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세부사업

민방위교육장

운영

- 비상기획관은 민방위교육장 촉탁계약직 임금협약(2018.12.17.)이 2019년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되어 2018년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부족하게 된바,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를 인건비 (기간제근로조등보수)로 5백만원을 전용(2019.11.21.) 증액하고도 인건비 집행잔액(0.2%, 9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또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도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10.1% (3,800 천원) 불용처리하였음.
 - ※ 2019년 제290회 정례회 기간에 전용사용 보고(2019.11.29.)하였음.

<2019회계연도 전용사용>

예산의 전용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률) 감액 증액 전용일 99 29.923 5.000 34.923 34.824 2019-(0.2%)11-21 3.800 42.308 5.000 37.308 33,508

(단위: 천원, %)

(10.1%)

○ 이는 예산편성 당시는 물론이고, 관련 예산의 전용 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산출기초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함께,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경우에도 실소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 분석을 통해 전용한 예산이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출예산 통계목별 과다 불용(20% 이상) 사업

-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여비로 예산현액(5,040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전액 1,189만원)이 23.6%로 과다하게 높게 발생되었음.
 - ※ 2017년도 26.1%, 2018년 4.9% 집행잔액 발생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현액(2억 1,535만원) 대비 불용(집행잔액 5,953만원)률은 27.6%로 전년도에 이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
 - ※ 2018년도 예산현액(2억 1,167만원) 대비 불용률 88.6%(집행잔액 1억 8,757만원) < 최근3년간 통계목별 20%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2019	기본경비(국내야비)	50,400	38,508	11,892	23.6	유관기관방문 및 출장횟수 감소
2019	을지태국연습준비 및 실시(사무관리비)	215,351	155,824	59,527	27.6	훈련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진액 발생
2018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무관리비)	211,671	24,097	187,574	88.6	을지연습 유예로 인한 집행진액 발생
2017	사회복무요원 관리(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46,034	421,885	124,149	22.7	병무청에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축소배정
2017	기본경비(국내여비)	49,000	36,224	12,776	26.1	통합 점검 실시로 개별출장 횟수 감소

○ 비상기획관은 2019년도 소속 공무원의 유관기관 방문 및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와, 훈련기간의 축소에 따른 "을지태국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을지태국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같은 훈련기간의 축소 등의 사유²)로 2년 연속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18년도 을지연습이 행정안전부 방침³⁾에 따라 잠정 유예 및 축소 운영되어 관련 '사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며,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 의회에서도 을지연습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바,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에 편성된 예산액(68만원) 대비 786.0%(535만원)를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6개 사업 12건에 2.079만원에 달하고 있음.

^{2)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3)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4)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사무관리비) 산출기초	예산현액	집행액	초과 사용액	집행률
		85,511	106,229	20,788	124.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 관리	실무교육 교재비 등	2,000	2,235	235	111.8
	회의장 대관료 지급 등	7,200	7,272	72	101.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영상 및 음향시스템비 지급 등	6,000	6,182	182	103.0
	안보자문단 연구과제 등 자료인쇄	4,000	12,689	8,689	317.2
사회복무요원 관리	교육강사수당 지급	130	225	95	173.1
	위촉장제작 등 경비	12,300	13,313	1,013	108.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 강사선발 평가비, 만족도 평가비 등	25,600	25,650	50	100.2
3.11.2	여성민방위경진대회 및 창설기념행사 경비 등	18,000	19,238	1,238	106.9
민방위교육장 운영	시무용품 구매	6,900	7,895	995	114.4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681	5,353	4,672	786.0
기본경비	수선비	180	253	73	140.6
	프린터 토너 구입비	2,520	5,994	3,474	237.9

- ※ 2017회계연도 결산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산출기초별 내역 : 14건에 2,885만원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및 불용

○ 비상기획관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을 통하여 "민방위 교육 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당초 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0%(87,984백만원) 증가한 3억 3천 1백만원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당초 예산(5억 8천 8백만원) 대비 50.0% 증가한 8억 8천 2백만원을 평성하여 2개 사업에 5억 4백만원을 증액한바 있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당	2019예산	당초예산대비			
세구가합된	초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비율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	331	210	173.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882	294	50.0		

1)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을 확보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자본보조	(x271,656)	(x271,656)	(x-)
	882,588	588,588	294,000

○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이 2019년 3월말 기준 26.4% (175,412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19년말 현재 보유율이 32.0%(212,894개)로 개선되었음.

〈2019년도 결산 기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필요량	'19년	결산	'20년 3	월 (현재)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시		
1 -	(대원수)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현황	654,563	212,894	32.0	212,894	32.5	212,894	32.5	

〈市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개선 중기 계획(안)〉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확보율(%)	35.9	41.1	46.5	50.6	52.6	55.8

○ 다만, 매년 방독면 확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방독면 확보는 요원해 보이는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에 보다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과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필요량 (대원수)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대원수)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대원수)	보유량	보유율 (%)	필 요 량 (대원수)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대원수)	보유량 (3월)	보유율 (%)
현황	695,520	135,145	19.4	688,134	153,242	22.3	674,342	173,901	25.8	665,596	212,894	32.0	654,563	212,894	32.5

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천 1백만원으로 '전산개발비' 통계목을 새로 설치하여 기정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1%(2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2019년 추경)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30,000) 331,410	(x-) 121,410	(x130,000) 210,000
사무관리비	(x-) 80,310	(x-) 80,310	(x-)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전산개발비	(x130,000) 210,000	(x-) 0	(x130,000) 210,000
행사실비보상금	(x-) 3,000	(x-) 3,000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	(x-) 30,000	(x-)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사유는 민방위 교육통지서 송달 수단에 있어서 국비 매칭을 통해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전자고지의 방법을 추가 병행 하려는 것으로. ○ 휴대폰번호에 대하여 본인동의 및 수집없이도, 서울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정보(CI값)을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는 "서울시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시스템 (약칭: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2019.11.30, 준공)한바 있음.

〈 서울시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

○ 구축 시스템 운영 절차(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대원 정보 → 市 민방위 교육훈련 고 지 및 관리시스템 연계 → 민방위대원에게 전자고지 통지서 발송
- 민방위교육장에서 QR코드 활용 출결/설문조사 → 市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시스템 연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과 연계 처리
- 예산 집행 내역: 총 예산액 210,000천원, 지출액: 201,380천원

구 분	내 역	급 액	지출처
시스템구축 용역비	시스템 구축	200,500천원	㈜ 포뎁스
회계정산수수료	회계정산수수료 지출	880천원	신한회계법인

○ 집행잔액 : 8,620천원

○ 다만, 전산개발비의 4.1%(862만원)를 불용시켰는바, 비록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사업 용역 날찰차액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인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산개발비 집행 내역〉

사업명	본예산	추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민방위교육훈련준비및 행사추진(전산개발비)	0	210,000	210,000	201,380	8,620	4.1

○ 또한,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및 「민방위기본법」 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송달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은 전자고지 후 교육대상자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확행 등 사업의 법적 효력 제고에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근거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 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마.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 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5)」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6)」)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예산현액 (2억 2천만원) 대비(집행잔액 13천원) 높은 집행률(99.9%)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사업정산 내용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햑'은 수요 증가(계획 4,530명 → 4,566명)로 당초 예산(1억 8천만원) 대비 1.4%(254만원) 초과하여 변경 사용하고,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는 4.6%(92만원),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8.1%(163만원) 예산을 일부 감액 변경하여 사용 하는 등, 의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는바,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각 사업별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 후 세 대 전 적 지 <i>견</i> 학	6 . 2 5 전쟁 기 념 행 사	나 라 사 랑 안 보 포 럼
예 산 액	220,000	180,000	20,000	20,000
집행액	219,987	182,537	19,078	18,372
집행잔액	13	-2,537	922	1,628

⁵⁾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총 보조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의 정산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은 총 26회(4,566명) 실시(25개 자치구 등)하였음.
- '나라사랑 안보포럼" 행사의 경우는 여전히 포럼 패널 및 참가자를 재향군인 회 회원 위주로 운영하여, 노령화 및 이념 편향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련 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33.3%(1천만원) 감액(3천만원→2천 만원)하였음에도 8.14%(163만원)를 불용시키는 등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등 사업 취지의 달성 보다는 특정 대상자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요식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폐지 또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사업 운영 주체의 다양화 등 사업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라사랑 안보포럼(2회))

1 차	2 차	
○ 일시: 10. 25(금) 14:00~16:30	○ 일시: 11.28(목) 15:00~18:00	
○ 장 소 : 서경대학교 강당(문예관)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	
(성북구 서경로 124)	(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370명	○ 참여인원 : 250명	
(학생 200, 향군회원170명)	(학생 50, 향군회원 150명)	
○ 주제 : '한반도 안보정세와 우리의 대응'	○ 주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 및 전망'	
(패널 : 문○○박사 외 4명)	(패널 : 문○○박사 외 4명)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